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14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를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대표자 : 윤갑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2019.5.21.	제KC 2015-6호	(7번군)	
				품목	세부품목
				다. 이·미용기기	⑤ 전기면도기 ⑥ 전기이발기
				사. 구강청결기	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
허.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